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사고표준지침 개발 및 고시 등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안전사고표준지침 개발 및 고시	3
2.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	8
3. 보조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13
4. 사고 발생 시 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공	15
※ 참고자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5. 19.
3. 회 부 일 : 2026.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제2항 신설).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사고표준지침 개발 및 고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유형, 이동수단, 학생의 연령, 활동 장소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 표준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유형, 이동수단, 학생의 연령, 활동 장소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안전사고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2. 학생 이동(승차·하차를 포함한다) 시 인솔 및 보호·감독 기준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u>안전사고관리 지침</u>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3. <u>활동 장소 및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기준 및 위험요인 조치 기준</u> 4. <u>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보고 및 연계 절차</u> 5. <u>그 밖에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u>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청, 교원단체 및 안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 ----- ----- -----<u>안전사고관리 지침</u>(이하 “<u>안전사고관리지침</u>”이라 한다)을----- ----- -----<u>.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함께 보급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 기능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사후 안

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¹⁾.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 유형을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③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황파악 및 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 순서에 따른 대응절차를 규정하고 있음²⁾. 다만, 동 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절차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범위 또한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안전조치에 한정되어 사전 예방조치는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기존의 안전사고관리 지침과 함께 보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표준지침에는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학생 이동 시 인솔 및 보호·감독 기준, 활동 장소 및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기준 등

1)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참조

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존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규율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사고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면책의 범위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함으로써, 교직원 등이 정당한 예방조치를 다한 경우 사고 발생 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전사고표준지침을 기존 안전사고관리 지침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경우 작성·개정·시행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현장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 효율성 및 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안전사고표준지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이러한 세분화된 기준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궁의 기준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는 포괄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지침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필요성에 공감하나, 별도의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현행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예방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
- 또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침은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시·도교육청³⁾, 초등학교사노동조합: 신중검토

-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늘어나는 역효과 우려
- 지침이 사후 책임 추궁 기준으로 활용될 우려
- 지침은 ‘학생에 대한 입장지도 및 기본 안전교육’으로 한정 필요
- 지침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무리한 교육활동을 압박하는 규제로 악용될 우려
- 지침 제정·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3) 서울·경기·전남·세종·충북

2.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u>안전사고관리 지침에</u>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④ ----- ----- ----- <u>안전사고관리지침(안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u> ----- ----- ----- -----.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u>제3항에</u> 따른 <u>안전사고관리 지침에</u>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u>다한 경우에는</u>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 ----- <u>안전사고관리지침에</u> ----- ----- ----- <u>다하였거나</u> <u>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u> ----- -----.

나. 검토의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여⁴⁾ 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등 공제급여⁵⁾를 피공제자⁶⁾ 또는 보호자등에게 지급하고 있음.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 등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함⁷⁾. 한편, 공제급여 지급 후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공제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음⁸⁾.

이와 같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학교안전법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5)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례비

6)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제14조)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하 “교직원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직원등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상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와 달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됨에 따라 교직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체크리스트로 기능하면서 사후적 책임 추궁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지침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중과실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이 체감하는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규범적 기능 약화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침 준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이나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기준으로서 지침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둘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생길 우려가 있음. 민사상 경과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⁹⁾ 국·공립학교 교직원도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교직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¹⁰⁾¹¹⁾,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법에 따라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될 수 있음¹²⁾.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경과

9) 교육활동 중 교직원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면책 범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1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1)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에 그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¹³⁾ 공제급여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어려워져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고의·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지침에 따라 의무를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한다”는 표현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인지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 법무부

-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체험 중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일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경과실만 있는 교원 등이 민사상 면책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사용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권리보장 수단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는 비의료인 응급의료행위자 면책 시 그 사용자인 병원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등)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관련 보충 의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공제급여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요건·범위가 한정되어 실제 손해에 미달할 수 있고, 교직원 등 배상의무자가 면책 시 피해자는 부족액을 전보받지 못할 가능성
- 따라서 경과실만 있는 교직원 등의 민사상 책임 면제 시 공제급여 지급 범위 특례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¹⁴⁾: 일부수정

- 고의·중과실 기준 모호
-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후책임을 묻는 행정 편의적 접근을 벗어나 ‘중대한 과실’의 명확한 정의 필요
- 면책요건의 예시와 판단기준 필요

13) 피용자가 면책된 경우 사용자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는 비의료인 응급의료행위자가 면책된 경우 그 사용자인 병원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등).

14) 전남·경기·대구

3. 보조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생략) <신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조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3.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2024년 12월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법은 보조인력 제도를 도입하였음¹⁵⁾. 보조인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사전 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참여하여

15) 학교안전법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솔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배치됨. 이는 학교 밖 교육 활동에 인솔교사가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전문성 및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개정안은 이러한 보조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책에 보조인력의 교육·연수, 안전관리 운영기준,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보조인력의 전문성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시책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 중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운영기준’ 및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그 범위와 구체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나, 안전관리 운영기준이나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개념이 모호함

○ **대구교육청: 신중검토**

- 현재 시도별 조례로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 우려로 삭제 필요

4. 사고 발생 시 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공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5(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소속 교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호인의 선임 지원 또는 교육청이 지정·위촉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 2. 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3. 민사절차(조정·소송을 포함한다)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및 지원 ③ 교직원이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현장체험학습 축소의 배경에는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수사 및 소송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

즉, 수사·소송으로 이어는 전 과정에 걸쳐 교직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대응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법률 지원의 구체적 내용에는 변호인 선임 지원, 수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민사절차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됨.

□ 개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법률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변호인 선임 지원 등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교직원이 체감하는 수사·소송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및 다양한 체험·실습 위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간 중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⁶⁾,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

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
· 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¹⁷⁾.

이처럼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교원지위법 체계를 우선 정비·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 취지와 관련이 적고, 「교원지위법」 제21조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시 법률지원 규정과의 중복성에 따른 현장 혼란 우려 - 따라서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지원 범위 확대 등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 시·도교육청¹⁸⁾, 초등교사노동조합: 일부수정 - 교육청 차원의 초기 대응 및 실질적 보호체계가 필요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교사를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 - 일반 과실에 대해 형사절차를 제한하는 특별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방식)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16)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7)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18) 서울·전남·대구·세종

교육부 고시 제2025-19호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
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
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 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 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